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훈예우국 1개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소통총괄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30일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직위의 보임범위를 복수직렬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4. 00. ~ 4.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공훈관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공훈발굴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공훈관리과장 및 공훈발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보훈처와 그”를 “국가보훈처”로 한다.

별표 3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9”를 “18”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2”로 한다.

별표 3의2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9”를 “18”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2”로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총리령 제1569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2년 9월 30일”을 “2024년 9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3]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3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운영과	7명 (학예연구관 2명, 학예연구사 5명)	2024년 6월 30일까지
2)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연구교육과	7명 (8급 1명, 학예연구관 2명, 학예연구사 4명)	2024년 6월 30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보훈예우국) ① (생 략)	제8조의2(보훈예우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훈예우국에 예우정책과 · 국립묘지정책과 · 공훈관리과 및 공훈발굴과를 두며, 예우정 책과장 및 국립묘지정책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 기관으로, <u>공훈관리과장은 부이</u> <u>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u> <u>는 학예연구관으로, 공훈발굴과</u> <u>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u> <u>로 보한다.</u>	② ----- ----- ----- ----- ----- ----- <u>공훈관리과장 및 공훈</u> <u>발굴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u> <u>· 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u>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평가대상 조직) <u>국가보훈</u> <u>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u> <u>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u> <u>별표 13과 같다.</u>	제23조(평가대상 조직) <u>국가보훈</u> <u>처</u> ----- ----- -----.
총리령 제1569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 부칙	총리령 제1569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 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소통총괄팀은 <u>2022년</u> <u>9월 30일</u>까지 존속한다.	----- ----- ----- <u>2024년 9</u> <u>월 30일</u>-----.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3]

국가보훈처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19</u>	<u>18</u>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u>1</u>	<u>2</u>	+1
학예연구관			
·	·	·	
·	·	·	

[별표 3의2]

국가보훈처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19</u>	<u>18</u>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u>1</u>	<u>2</u>	+1
•	•	•	
•	•	•	